

文武雜科 榜目の 醫史學的 價値

柳 熙 英*

I. 緒 論

榜目하면 司馬榜目(1393A.D.)¹⁾으로 原流를 찾을 수 있는데, 이에 對한 研究는 活發하다.

雜科²⁾는 文·武科外에 譯科·醫科·陰陽科·律科 등을 總稱한다.

실제로 本稿에 다루려하는 文·武雜科榜目은 宣祖 13年(1586 A.D.)에 乙亥字로 出刊된 版本으로 稀貴本이다. 이는 朝鮮時代의 中人社會階級層으로 轉落됨을 重要視한 뜻에서 原因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西文東來가 1832年 始作되면서 많은 國內外의 交流가 시작되자, 外國文化에 현혹되어 溫故而知新的 차분한 變化는 커녕 激變으로 치달아 우리 固有遺物은 정리치도 않고 모두 외면함으로써 우리의 찬란한 文化유산은 버림받았었다.

中人階層의 醫療社會科學에 대한 研究는 이 미 MiKi³⁾가 수차례 걸쳐 報告하였고, 李⁴⁾의 姓源錄이 있으며, 醫療人의 側面의 拔萃는 반드시 必要하다고 인정된다.

本 榜目은 醫科八世譜·醫等第譜와는 달리 恩門部의 職位와 姓名에 이어 榜部의 內容에서 等次와 貫鄉·姓名·父의 居處·職官등이 名記되어 있다.

本 榜目은 高麗大 中央圖書館 貴重 388 로서 貴重한 資料이다.

本 雜科榜目 愼 miki^{5,6)} 등은 지적치 않은 榜目으로 許俊·楊禮壽가 御醫로 在職時에 施行한 雜科이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等門人

의 거의가 醫學史에 정리되지 않은 채이다.

本稿에서는 雜科榜目中 醫人部만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書誌學的 考察

榜目은 一卷一冊으로 單行本이며, 32枚에 框槪이 24.0×16.0(cm), 四周雙邊有界로 半板槪이 18.3×13.6(cm), 9行 16字로 註雙行이고, 內向三葉花紋魚尾로 上下黑魚尾에 中間은 榜目이라 하였다.

本書는 乙亥字本⁷⁾으로 楮紙이며, 序文은 없고 目次와 例示等이 없이 本文만으로 되어 있다.

2. 活字의 使用

乙亥字本⁸⁾은 世祖元年 乙亥(1455)年에 앞서 安平大君의 筆體인 庚午字(一名 壬申字)를 없애고 姜希顔으로 하여금 字體를 쓰게 하여 新篇한 것이 乙亥字이다.

乙亥字는 우리나라 鑄字史上 甲寅字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代表的인 活字로서 1592年 壬辰亂이 있을 때까지 補鑄되면서 서적인쇄에 사용되어 왔고, 특히 佛書의 印出에 많이 이용되었다. 乙亥字는 字劃이 바르고 옆으로 퍼졌고 글자가 한편으로 쏠린 느낌을 준다.

代表的인 乙亥字版本으로는 訓辭, 御製兵將說을 世祖撰으로 出刊한 바 있다.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教授

3. 榜目の内容⁹⁾

譯·醫·陰陽·律科와 六科別試殿試에 文武科도 分類되고, 醫科에서 別紙로 恩門에 이어 醫科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内容은 다음과 같다.

1) 恩門

禮曹參判	黃孟獻
參議	金揚震
典醫監提調	丁壽崗
司憲府掌令	沈彦慶
禮曹正郎	尹安仁
司諫院正言	洪后堅
典醫監正	宋虎元
教授	任柱

2) 醫科榜

< 一等人 >

中直大夫前行	惠民署主簿	沈殷彰	清原
本	青松	居京	
父	副司果	端	

< 二等人 >

宣教郎行	慶尙道審藥	李芝	秀老
本	平昌	居京	
父	領中樞府事	季全	

< 三等人 >

通訓大夫行	典醫監奉事	李鄭臣	忠鄉
本	慶州	居京	
父	守全州府尹	堦	

奉訓郎前行	典醫監奉事	張世傑	子俊
本	犬元	居京	
父	副司猛	熙	孫

啓功郎行	典醫監副奉事	金元弼	翼之
本	清州	居京	
父	副司正	興	孫

承訓郎前行	典醫監直長	柳濟	濟之
本	文化	居京	
父	贈參判	廷秀	

醫生	金彦臣	勳老
本	平山	居晋州
父	學生	繼正秀

承訓郎行	典醫監參奉	鄭裕	裕之
------	-------	----	----

本	清州	居京
---	----	----

父	審藥	熙文
---	----	----

宣務郎前行	典醫監奉事	閔思誠	信之
-------	-------	-----	----

本	驪州	居京
---	----	----

父	學生	淑
---	----	---

III. 考 察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醫療要員의 養成制度이다.

封建中央政府的 醫療要員은 中央醫司인 內醫院 15名, 典醫監 23名, 惠民院 12名, 活人書 12名 등으로써 法制的으로는 모두 62名 이고 이밖에 일정한 습득관만이 있었다.

醫人들을 기용하는 데는 출신성분(신분)상의 제한이 있었고, 또 일정한 修練을 거친 다음 정해진 과거인 取才·祿科試 또는 考淸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신분상의 規制内容을 보면, 먼저 再嫁하거나 失行한 婦女의 子孫, 시업의 子孫은 文科·生員·進士科 등에 應試할 수 없다¹⁰⁾ 고 하였다. 단, 典醫監·惠民院등 雜科에서는 그의 才能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¹¹⁾ 고 規定하며, 醫員職은 文武科와 엄연히 구분하였다.

과거는 式年에 한번씩 전년 가을에는 초시를 치르고 초봄에 복시를 치르게 한다¹²⁾ 고 하였다.

의과 초시에서는 19名, 복시에서는 9名을 선발한다.¹³⁾

의과의 과거에서 초시는 전의감에서 관리하고, 복시는 예조 전의감과 제조가 함께 관리하였다.

1492(선조 23年)에 보면 取才의 불합격한 자는 參奉(從 9品)職을 제수하였다.

中人은 처음부터 實學을 科目으로 하였다. 그것은 取才라고 하여 取士와는 구별되었다. 동일한 과거라고 하여도 양반의 경우는 取士이고 中人은 取才였던 까닭에 경국대전에서 禮典의 取才항목에 “學四孟月 本曹同提調取才 無提調

處則同該當上官取才”라 한 것이다.

따라서 中人들의 家學족보는 어떤 면으로는 完璧한 한 부의 職官錄이라 해도 된다.

한편 이들 諸科出身者들의 任用은 雜科에서 叙用을 譯科에서 1等은 從七品職을 주되 2等은 從8品の 官階만을 주고, 3等은 從9品の 官階만을 준다. 陰陽科와 醫科 및 律科에 있어서는 1等은 모두다 從8品職을 주고, 2等은 正9品の 官階만을, 그리고 3等은 從9品の 官階만을 준다. …… 授階者는 모두 本衛門에 權知로 配置 한다.¹⁵⁾

參考的으로 文科及第에 叙用을 보면, 文科에 있어서는 甲科第一人은 從6品職을 주고 나머지는 正7品職을 준다…….¹⁶⁾

以上으로 보아 同一 榜目 에 收錄된 諸科에 第一人이라 할지라도 各科, 即 文·武·雜科에 品職이 다른 面을 觀察할 수 있는 바와 같다.

IV. 結 論

韓醫學史에 近代資料가 敬逸되어 있는 一片으로서 貴重本이 傳함은 다행한 일이며,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다.

1. 本 榜目에 內容이 報告된 바 없으며,
2. 在職人이 別試에 應試함을 알 수 있고,

3. 醫生들도 別試에 應試할 수 있으므로 試對象에 幅을 把握할 수 있고,

4. 3等人은 多數인 것으로 보아 試續과의 關係로 選別한 것으로 推測된다.

以上으로 보아 앞으로 雜科榜目は 더욱 發掘하여 整理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參 考 文 獻

1. 慎日範; 도서관소식, 圓光大, 51:20, 1987.
2. 雜科別로 綜合榜目이 있음.
3. 三木榮; 司馬榜目, 書 同好會, 3:
4. 李昌鉉; 姓源緣, 旰成社, 1986.
5. 三本符;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富士精版社, 1965.
6. 慎日範; 도서관보, 圓光大學校, 52:23, 1987.
7. 金完燮; 晚松個人文庫, 고려대, 1979.
8. 開校 20 주년記念 展示圖書目錄, 서울대학교, 1966, p.7.
9. 文別試殿試
10. 경국대전, 이전 한품서용
11. 경국대전, 이전 한품서용
12. 宋俊浩, 이조생원진사의 연구, 국회도서관 p.31, 1970.
13. 대전속록 이전 구입.
14. 梨花女大 사학연구; 조선신분사연구, 法文社, p.201, 1987.
15. 宋俊浩, 이조생원진사의 연구, 국회도서관, 1970.
- 16.